

제7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 개최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7월 7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정 성립(10건)

■ (주)호림종합건설에 대한 건설설하도급 분쟁 건

- 발주처로부터의 공사 중단 요청을 이유로 공사를 타절케 하고 타절 정산금 310,062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자재를 신고인에게 반납하고 미시공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타절 정산금 180,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광신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계약금액의 확정 없이 공사를 선시공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신고인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 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정산합의금 9,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한건한국스테인드그래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하자이행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8,900천원을 유보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 31,06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유보금은 전액 지급하고 추가 공사비는 17,000천원으로 정산하고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동화기계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5,06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전액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동화기계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13,65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전액 지급하여 조정 성립

■ 한국대동전자공업(주)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하여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기제작한 금형에 재가공을 지시하였으면서 신고인이 청구(7,530천원)한 금형 재가공비가 과다하다 하여 재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정산합의금 5,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중흥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의 현장소장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진행시킨 사실을 피신고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6,05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전액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센서스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신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일부 하도급대금만 지급하고 잔금 4,130천원에 대하여는 물품으로 반품받을 것을 강요하며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전액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유유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이 건 계약과는 상관없이 대여한 유압몰딩기를 신고인이 분실하였다 하여 변제를 요구하며 금형에 대한 하도급대금 14,68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신고인은 분실한 기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배상키로 하고 불량으로 인한 공제금(1,682천원)을 제외한 12,998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 (주)새한건설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552천원)를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2,468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어음 할인료를 포함한 3,02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2건)

■ 남광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를 피신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감액받은 비율대로 단가를 적용하려 하자 신고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고액의 단가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신고인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사건이침을 요구하여 조정 불성립

■ 대유토건(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13,400천원 및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6,94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피신고인이 조사에 2회 불응하여 조정 불성립

조정 불개시(2건)

■ 대기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이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사업자 요건결여로 반려

■ (주)K&M에 대한 제조하도급 분쟁 건

- 피신고인의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중소기업자로 원사업자 요건결여로 반려

회원사 참여란 신설

아는 것이 힘!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내용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본 협회에서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회원(사) 제언란

바람직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관한 회원(사) 여러분의 정책제언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율적인 준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기업하기 쉬운 공정한 경쟁환경과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여러분의
제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상담 코너 Q&A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새로이 제·개정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십니까?
본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공정거래 관련 상담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문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하도급 관련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